

뉴욕시(CITY OF NEW YORK)
관리 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NYC OMB)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재해 복구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DISASTER RECOVERY PROGRAM, CDBG-DR)
자금 집행 요청 의향 통지

자금 출자 요청

2026 년 5 월 7 일 또는 그 즈음에 뉴욕시(City of New York, 이하 "시")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1974 년 지역사회개발법(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74)(개정판) 및 2023 년 계속 세출법(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23)(공법(Public Law) 117-180)에 따라 승인된 커뮤니티 개발 블록 보조금-재해 복구(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Disaster Recovery, CDBG-DR) 자금의 집행을 요청하여 뉴욕시 주택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NYCHA) 엘리베이터 복구력 개선(Elevator Resiliency Improvements)(그룹 2)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NYCHA 의 7 개 소유지에 엘리베이터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CDBG-DR 기금 약 \$234,000 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프로젝트 활동에는 NYCHA 의 엘리베이터 서비스 수리 부서(Elevator Service Repair Department, ESRD)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기존 서비스 공간에 자동 전압 조정기(Auto Voltage Regulator, AVR) 장비를 설치하고 기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새로운 전선관을 설치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ESRD 는 AVR 을 프로젝트 현장으로 배송하여 설계 구성에 따라 모터실이나 지하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다음 ESRD 는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AVR 장치를 기존 바닥 슬래브에 고정합니다. 전기 기술자들이 기존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바닥의 개구부를 통해 전선관과 배선을 설치하고 새로운 장비를 기존 건물 전기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브라운아웃이라고도 알려진 전력 공급 감소 기간 동안 NYCHA 거주자들에게 노인 전용 건물 및 고층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ConEd 는 에너지 절약과 전력망 손상 방지를 위해 정전 시 서비스 전압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압 강하는 NYCHA 엘리베이터 장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는 브라운아웃 기간 동안 세입자들이 건물에 갇히거나 아파트를 벗어나거나 아파트로 돌아올 수 없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프로젝트는 아래에 나열된 7 개 개발 사업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발 사업지	거리 주소	자치구
바루크 하우스 애디션	72 콜롬비아 스트리트	맨해튼

하버뷰 테라스	530 웨스트 55 번 스트리트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 I 사업 구역	175 엘드리지 스트리트	맨해튼
미첼	190 링컨 애비뉴	브롱크스
모리사니아 에어 라이츠	3135 파크 애비뉴	브롱크스
루즈벨트 I	997 드칼브 애비뉴	브루클린
밴 다이크 II	430 듀몬트 애비뉴	브루클린

섹션 58.35 에 따른 범주적 제외 대상

HUD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HUD 환경 검토 절차, 24 CFR Part 58.35 에 따라, 위에 나열된 부지에서 시행되는 NYCHA 엘리베이터 복구력 개선(Elevator Resiliency Improvements) 프로젝트의 시행은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의 환경평가 요건에서 범주적으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안된 프로젝트에는 24 CFR 58.35(a)(3)(ii)에 따라 다세대 주거 건물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개선 작업이 포함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환경 검토 기록부(Environmental Review Record, ER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RR 은 전자적 방식 또는 미국내 우편을 통해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요청서는 미국 우편으로 뉴욕시 관리예산국 환경 담당 부서장 줄리엣 제이콥스 씨(Juliet Jacobs, Unit Head – Environmental (CD), New York City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주소: 255 그리니치 거리, 8 층, 뉴욕, NY 10007(255 Greenwich Street, 8th Floor, New York, NY 10007))에게 제출하거나 이메일(CDBGComments@omb.nyc.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의견 제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위의 주소와 이메일을 통해 NYC OMB 에 ERR 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년 5 월 6 일까지 접수된 모든 의견은 자금 집행 요청서를 승인하기 전에 뉴욕시 OMB 에서 검토합니다. 의견을 보내기 원하시는 경우, 본 통지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환경 인증

NYC OMB 는 시와 줄리엣 제이콥스(Juliet Jacobs) 씨가 인증 책임자 자격으로 환경 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책임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고 이러한 책임이 충족된 경우 연방 법원의 관할권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HUD 에 인증합니다. HUD 의 인증 승인은 NEPA 및 관련 법률과 당국에 따른 책임을 충족하고 시에서 CDBG-DR 프로그램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금 집행에 대한 이의 제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HUD 는 자금 출자 및 NYC OMB 인증에 대한 이의 제기가 실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 해 검토합니다. (a) NYC OMB 의 인증 담당자가 인증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b) NYC OMB 가 24 CFR 파트 58 의 HUD 규정에서 요구하는 단계를 생략하거나 결정 또는 발견을 하지 않은 경우, (c) 보조금 수령자 또는 사업의 기타 참여자가 HUD 의 자금 집행 승인 전에 24 CFR 파트 58 에서 승인하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d) 40 CFR 파트 1504 에 따라 활동하는 다른 연방 기관이 프로젝트가 환경 품질 관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서면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24 CFR 파트 58, 섹션 58.76)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CPDRROFNYC@hud.gov)로 보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는 자는 HUD 에 문의하여 이의제기 기간의 실제 마지막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시(City of New York)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시장

셰리프 솔리만(Sherif Soliman), 경영 및 예산 담당자

날짜: 2026 년 4 월 29 일